

# LPG용 호스길이

- LPG 용 호스길이는 짧을수록 안전 -

1979. 2. 8 개정, 공포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3)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 및 기술상 기준"에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배관중 호스의 길이는 3m 이내로 할 것", 그리고 가스사업법 시행규칙(별표5)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기준"에 "배관중 호스의 길이는 3m 이내로 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결론해 보코자 하는 것은 법에서 규정한 호스의 길이 3m 는 과연 적정하기 하는 심이다. 이를 위해 외국의 예를 살펴보면 (1) 일본 "건축법" 3편 14장 고압가스 관계시설중 11.2.5에 "조정기 또는 가스기구 등과 고정배관을 접속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스전용 고무관은 연소가구에 사용되는 것에 있어서는 2m이내로 하여야 한다."(당협회의 점검기준도 동일) (2) 미국 NFPA 의 NATIONAL FIRE CODES VOL 5 LPG NO58-64 에 "건물 내에서 사용하는 호스는 6피트(1.8m)를 넘지 않는 최소길이이어야 한다. 또한 한거실에서 다른 거실로 연장하거나 간막이, 벽, 천정, 바닥을 통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행 우리나라 법에서 규정한 3m 는 외국의 예에 비하면 약간 완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호스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고압가스 누설로 인한 사고 위험도가 그만큼 늘어날 수 있으므로 법상의 규정을 내세우기에 앞서 LPG 를 연료로 사용하는 각종 영업장이나 주택의 각 연소가구마다 제반 주위 환경을 고려하여 사용에 적당히 않는 한 호스의 길이를 최소로 하여 사용하여야 하겠다.

참고로 한국공업규격(KS)에는 LPG용 고무호스나 비닐호스에 대한 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다.